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. 9. 6 선고 2018가단1062 판결 [임차보증금 반환 등 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8. 8. 23.

판결 선고 2018. 9. 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8,759,510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조영기

별지